

제출일자	의견제출자	내 용	반영여부
2001.4.23	마장동 신성연합조합 주택(120명)	· 도시계획안에 반대하며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속요구	미반영
2001.4.20	마장동 818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(구의원 양태범 외 816명)	· 공원조성 및 기존 축산물시장의 시설 개선 ·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속 · 서울시농수산물조례 제10조제2항 조속히 개정 · 중요 정책 입안시 관련 주민들에게 적극 공지	미반영
2001.4.14	성동구민	· 우시장 유통센터 건립을 제고하라	미반영
2001.4.14	글본이	· 옛 우성농역을 수용하여 공원을 조성	미반영
2001.4.14	현대아파트 주민	· 절대 안될 일 우리 구에 축산물유통시장	미반영

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82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6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
2. 입안내용 : 자연녹지지역 → 제2종 일반주거지역

구분	용도지역	위 치	면적(m ²)	비고
변경전	자연녹지 지역	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번지	55,508	
변경후	제2종일반 주거지역			

-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, 건물높이 6~8층 규모(평균 7층)로 함.

3. 입안사유
 - 고척동 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하고자 1999년 2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"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, 건물높이 6~8층 규모(평균 7층)로 건립"하도록 하였는바,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을 입안 결정코자 함.

4. 추진경위

- 1976. 3. : 자연녹지지역 결정(건설부고시 제37호)
 - 1999. 2.24 :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
- "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"하되 공원 인접지 경관관리와 과밀화 방지를 위해 6~8층으로 계획하되 평균층수는 7층을 유지하고, 10% 이상 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 조건 부여하는 방안 강구
 - 2000.12. 6 : 공람공고
- 공고기간 : 2000.12.6~2000.12.20(14일간)
- 의견접수 : 없음
 - 2001. 1.19 : 구의회 의견청취(의견 없음)
 - 2001. 2. 2 :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(원안가결)
 - 2001. 2. 9 : 용도지역변경 요청(구→시)
5. 참고사항
 - 고척제2구역 주택재개발지정 추진 중
- 건축규모 : 아파트 6~8층 17개 동 668세대 건립
 건폐율 30% 이하, 용적률 180% 이하
- 도로(무상귀속) : 5,220㎡(9.4%)
- 공원(무상귀속) : 5,560㎡(10.02%)

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8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6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1. 안 건 명 :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(해제), 용도지역 변경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2. 입안내용

가.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(해제)

구분	연번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계			1,853,773	
해제	1	종로구 부암동 306-10번지 일원	128,658	
해제	2	노원구 중계본동 29-47번지 일원	136,476	
해제	3	노원구 상계1동 1200-1번지 일원	38,458	
해제	4	은평구 진관내동 411-3번지 일원	269,766	
해제	5	은평구 진관외동 315-3번지 일원	490,671	
해제	6	은평구 구과발동 113-22번지 일원	216,843	
해제	7	강서구 개화동 477-1번지 일원	123,667	부석·신대·내촌·새마을
해제	8	서초구 방배2동 2762-8번지 일원	84,639	전원마을
해제	9	서초구 염곡동 111-4번지 일원	84,740	염곡마을
해제	10	강남구 자곡동 440-102번지 일원	53,675	못골마을
해제	11	강남구 율현동 300-39번지 일원	53,787	방죽1마을
해제	12	강남구 세곡동 425-4번지 일원	57,284	은곡마을
해제	13	강동구 강일동 360-50번지 일원	115,109	

나. 지역변경 결정						
구분	연번	위 치	변경내역		면적 (m ²)	비고
			기정	변경		
계					1,773,436	
변경	1	종로구 부암동 306-10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128,658	
변경	2	노원구 중계본동 29-47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36,476	
변경	3	노원구 상계1동 1200-1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38,458	
변경	4	은평구 진관내동 411-3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259,893	
변경	5	은평구 진관외동 315-3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318,091	
변경	6	은평구 진관외동 175-164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136,817	기차촌
변경	7	은평구 구파발동 113-22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82,142	
변경	8	강서구 개화동 477-1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123,667	
변경	9	서초구 방배2동 2762-8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84,639	
변경	10	서초구 염곡동 111-4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84,740	
변경	11	강남구 자곡동 440-102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53,675	
변경	12	강남구 율현동 300-39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53,787	
변경	13	강남구 세곡동 425-4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57,284	
변경	14	강동구 강일동 360-50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15,109	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						
구분	연번	구역명	위 치	면적 (m ²)	비고	
계				1,037,707		
신설	1	부암동	종로구 부암동 306-10번지 일원	128,658		
신설	2	상계동	노원구 상계1동 1200-1번지 일원	38,458		
신설	3	진관내동	은평구 진관내동 411-3번지 일원	218,213		
신설	4	진관외동	은평구 진관외동 315-3번지 일원	353,854		
신설	5	구파발동	은평구 구파발동 113-22번지 일원	216,843		
신설	6	강일동	강동구 강일동 360-50번지 일원	81,681		
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(해제),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입안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1.2.2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(서울특별시 공고 제2001-70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일자 및 게재신문 : 2001. 2. 2 조선일보, 서울경제신문 -공람기간 : 2001.2.3~2001.2.16 (14일간) -공람공고 기간 중 접수 의견(관련부서·기관 및 주민) : 별첨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임기획단 의견 : 공람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의한 예비조사가 요망됨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부서·기관 의견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서·기관명	제 출 의 건	비 고
공원녹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람안에 이견 없음. ○ 우선해제 경계선 확정시 경계선을 따라 경계표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계명시 측량 필요 	
환경기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B해제로 인하여 해제구역내 수목훼손이 없도록 하되, 수목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이식 ○ 해제되는 구역경계 주변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복원 ○ 해제되는 구역 주변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. 	
의정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로 서측의 노원(하촌)마을도 동일생활권이므로 우선해제지역에 포함 추진 ○ 농지법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 개발시 농지전용협의 요망 	노원구 상계동
노원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계동 104번지 마을 -고지대 일부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지대의 기존 주거지역과 접한 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 지원 필요 	
강서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선해제지역으로 공람공고된 경계선이 개화동 421-57번지 일부를 지나가므로 경계선 조정 요망 ○ 개화동 559-93,15 566-28,29,30,31,32번지(7필지)도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로 해제범위에 포함 필요 ○ 도시계획 결정고시시 지형도면 승인고시내용을 명기하여 지형도면 고시사항을 같음 처리 요망 	

부서·기관명	제 출 의 건	비 고
은평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양주택단지 및 기자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결정 및 기자촌의 용도지역 상향 (제1종전용주거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) ○ 구과발역 주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○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제시 건의 ○ 진관외동 601-68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해제 요망 (훼손부담금 81억) ○ 경계선이 하나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 필요 ○ 못자리골과 구과발동 118-8번지 외 2필지 등 경계선 설정시 제외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해제 요망 ○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의 시비 지원 ○ 우선해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비지침 제시 요망 ○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수립 요청 	
서초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이 연곡동 90-6(유허가)과 90-1에, 90-9(미등기)와 90-2에, 117-2와 117-3(유허가 동일대지)에 걸쳐 있으므로 연곡동 90-1,-2, 117-3도 해제 요망 ○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 요망 (방배동, 연곡동) 	
강동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제범위의 확대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공원, 녹지, 주차장 등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-거주세대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-해제범위 밖에 산재한 노후주택지 흡수 ○ 해제경계선의 정형화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건축물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함에 따라 상당수 필지가 분할됨. -부정형한 경계선 설정으로 구역훼손의 우려가 크며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. 	

□주민제출 의견 ○복합사항		
제 출 자	제 출 의 건	비 고
은평구 진관내동 515 김재성 외 364인	○ 서울시의 우선해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반대함 (해제범위, 용도지역 조정 등)	
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 부회장 정종배 외 6인	○ 서울시의 우선해제방안에 대해 반대 - 우량 임야를 제외한 나지는 모두 해제 - 나지의 해제가 불가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구역 조정 해제	
은평구 구파발동 122-7 이충호 외 995인	○ 진관내동 일대 우선해제안에 대하여 근본적 반대	
은평구 진관외동 265-1 강강택 외 1,098인	○ 진관외동 일대 우선해제 발표안에 근본적 반대	
노원구 노원마을 김성수	○ 해제범위의 확대요구 (동일로 동측) ○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상향	
의정부시 장암동 382-20 김영좌 외 42인	○ 해제범위의 확대요구 (동일로 동측) ○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상향	
노원마을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404인	○ 해제범위의 확대요구 (동일로 동측) ○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상향 ○ 순환재개발 시행 (제1종일반→제2종일반)	
강서구 개화동 566-35 윤석길 외 3인	○ 취락 주변 공지까지 해제범위의 확대 ○ 용도지역 상향 (제1종전용→제1종일반)	
강동구 강일동 366-2 강일동재개발추진위원회 심상진 외 948인	○ 취락 주변 공지까지 해제범위의 확대 ○ 용도지역 상향 (제1종일반→제3종일반) ○ 해제범위 확대불가시 취락지구 지정, ○ 순환재개발 시행	

○ 용도지역 상황		
제 출 자	제 출 의 건	비 고
은평구 진관내동 409-16 김영기 외 21인	○ 진관내동 409, 410 일대 자연녹지지역 존치는 불합리하므로 용도지역 상황 요망	
은평구 진관외동 254-10 장면주 외 109인	○ 진관외동 424, 254, 421, 93 일대 진관시장의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일반상업지역)	
은평구 역촌동 1-3 국회의원 이재오	○ 진관외동 424, 254, 421, 93 일대 진관시장의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일반상업지역)	
은평구 진관외동 175-117 유봉환 외 45인	○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전용주거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)	기자촌
강남구 청담동 23-4 학교법인 해청학원	○ 구파발동 93, 95 일원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용도지역 상황 요망	
은평구 구파발동 49-1 최경복 외 59인	○ 구파발 역세권 지역인 구파발동 49, 50 일대 자연녹지지역 존치 재검토 및 용도지역 상황 요망	
중계1-1지구 개발추진위원회 유홍갑 외 2,134인	○ 중계동 우선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)	
서초구 방배2동 2877-41 용덕식 외 275인	○ 남태령(전원)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전용주거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)	
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조명현 외 146인	○ 염곡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전용주거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)	
강남구 세곡동 421-2 홍성목 외 102인	○ 은곡마을에 대한 용도지역 상황 요망 (제1종전용주거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상)	

○ 해제범위 포함		
제 출 자	제 출 의 건	비 고
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금호A 803-1902 조성업	○ 진관내동 395-2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내동 470-5 이진천 외 1인	○ 진관내동 470-2, -4, -5, -6, -7, 557-13 포함 요구	
은평구 역촌동 73-35 전강환, 이선아	○ 진관내동 475-7, -9, -12, -13, -14, -20, -29, -34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내동 518 김기정 외 3인	○ 진관내동 490-8, 490-15, 533-3, 480-4, 13, 479-4 포함 요구	
중구 장교동 1 한화B/D 10층, 한국국토개발(주) 성하현	○ 진관내동 289-26(잡종지 3,175㎡), 289-28(잡종지 122㎡), 297-1(대 132㎡) 포함 요구	
용산구 이촌동 415 한강A 101-502 신현팔	○ 진관외동 404-13, -14 (17,075㎡) 포함요구	조성중 택지
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산5-10 김순자	○ 진관외동 404-17, -18, -24, -25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202-9 심군택	○ 진관외동 404-17, -18, -24, -25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202-9 심군택	○ 진관외동 228-5, -7, -17, 225-3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221-3 오수철	○ 진관외동 218-2 (답 1,489㎡) 포함 요구	
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A B-505 강계순	○ 진관외동 482-14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479-218 유영수	○ 진관외동 479-218 포함 요구	
은평구 구산동 147-5 이정엽	○ 진관외동 479-222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479-145 박진운	○ 진관외동 479-224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479-145 박종화	○ 진관외동 479-145 포함 요구	

제 출 자	제 출 의 견	비 고
은평구 진관외동 479-146 최중상 외 1인	○ 진관외동 479-146 포함 요구	
서대문구 현저동 200 극동A 108-603 이봉목	○ 진관외동 479-144 포함 요구	
서대문구 현저동 200 이봉목 외 7인	○ 진관외동 479-144, 145, 146, 216, 218, 222, 224 포함 요구	
은평구 용암동 195-69 권영숙	○ 진관외동 175-783 포함 요구	
은평구 진관외동 141-26 염동철	○ 진관외동 141-17 포함 요구	
은평구 갈현동 12-518 이정수	○ 갈현동 12-518 포함 요구	
은평구 구파발동 128-1 박균삼	○ 구파발동 128-1(전, 공원내 토지) 포함 요구	
은평구 구파발동 118-8 박창호 외 9인	○ 구파발동 118-8, 117-1, -8 포함 요구	
은평구 구파발동 117-8 채규산 외 8인	○ 구파발동 118-8, 117-1, -8 포함 요구	
동대문구 제기동 136-38 홍문기	○ 부암동 297-4(대지 71평)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 로서 포함 요구	
종로구 부암동 364-1 임분희	○ 건축물이 있는 부암동 364-1 포함 요구	
종로구 부암동 363 김문배	○ 부암동 363 (건축물 있음, 공원내 대지) 362-18(전, 담장내) 포함 요구	
종로구 부암동 322-2 이경환	○ 부암동 322-2와 한 울타리 내인 322-40, 41호도 포 함 요구	
종로구 부암동 323 신평호	○ 주택이 부암동 323과 322-1에 걸쳐 있는바, 322-1 (전) 포함 요구	
종로구 부암동 319-11 노원규	○ 부암동 319-3(대, 182㎡)은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 중 인 토지로서 포함 요구	

제 출 자	제 출 의 건	비 고
강서구 개화동 417-1 손태용, 윤도여	○ 개화동 418-240 일대 취락구조개선사업 범위내인 개화동 교회 포함(416, 417, 417-1, 418-240) 요구	
강서구 개화동 336-6 유용훈	○ 개화동 336 한옥이 일부 걸쳐 있으므로 포함 요구	
부천 원미 중3동 1041 덕유마을 202-1414 류명숙	○ 개화동 361-44(임야 146㎡), -45(임야 515㎡), 산59 해제 포함	
기쁜소식선교회, 서울제일교회 김재홍 외 209인	○ 방배동 2720-1, 2721-1, 2722-1, 2723-1, 2725-1, 2730, 2731, 2776-1, 2779, 2779-1, 2780, 2780-1, 2792, 2973-1, 2776 (전, 임야 1,345평) 포함	
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405-304 김광호	○ 염곡동 115-1(답 1,070㎡), 115-3 (대 55㎡) 포함 (해당부지 앞, 옆, 뒤에 주택이 존재)	
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아파트 317-1701 진정오	○ 율현동 321(대, 337㎡) 포함	
강남구 세곡동 313-3 세곡교회 이상천 외 다수인	○ 세곡동 313-3 (대 694㎡) 포함 - '71. 4. 30 사용승인 건물	
강남구 세곡동 408-4 박창열 외 2인	○ 세곡동 405-4, 408-4, 407-3 사업시행시 함께 지은 건축물로서 4m도로 경계로 제외함은 불합리, 포함 요구	
강동구 강일동 367-1 심강섭	○ 강일동 367-1 건물 있는 토지로서 포함 요구	
강동구 강일동 366-8 심운보	○ 강일동 366-8 건물 있는 토지로서 포함 요구	

○ 해제범위 확대		
제 출 자	제 출 의 건	비 고
은평구 진관외동 143-1 김희춘 외 26인	○ 진관외동의 대지화된 공터, 전·답은 해제범위 추가	
종로구 부암동 195-2 이덕수	○ 부암동 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해제 또는 소규모 취락의 이축 허용	
노원구 상계1동 1205-40 박인호	○ 상계1동 1205-40 윗부분도 동일생활권으로 해제 포함, 사유지 미해제는 불합리	
노원구 상계1동 1205 박종태 외 8인	○ 동일로 동측 사유지 포함 (동일생활권)	
이윤경	○ 동일로 동측 사유지 포함 (동일생활권)	
노원구 상계1동 1205-21 김명숙	○ 동일로 동측 사유지 포함 (동일생활권)	
노원구 상계동 1205-16 이봉순	○ 동일로 동측 사유지 포함 (동일생활권)	
강서구 개화동 246-14 박주태 외 29인	○ 개화동 246-14 일대 상사마을 우선해제 포함	
강서구 개화동 246-14 박주태 외 2인	○ 개화동 246-14 일대 상사마을 우선해제 포함	
강서구 개화동 231 김영주 외 116인	○ 개화동 상사마을 우선해제 포함	
강남구 세곡동 422-20 이기철 외 다수인	○ 자곡동 쟁골마을은 못골마을과 같은 동이므로 우선 해제 포함	
강남구 세곡동 107-19 이만용 외 다수	○ 율현동 방죽2마을, 세곡동 윗반고개, 아래반고개마을의 우선해제 포함 (도로로 양분된 마을의 인구합산시 1천명 이상)	

○ 경계선 조정		
제 출 자	제 출 의 건	비 고
은평구 진관내동 415-3 윤성복	○ 진관내동 415-9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은평구 진관내동 406-4 윤경옥	○ 진관내동 406-4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은평구 진관내동 387-6 조의섭	○ 진관내동 387-6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은평구 진관외동 175-798 이덕모	○ 진관외동 175-798, -742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 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만 포함)	
은평구 구파발동 83-6 김복희	○ 진관외동 260-1, 3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경기 연천군 백학동 노곡1리 700-4 이순우	○ 진관외동 390-13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506-1502 안경현 외 1인	○ 진관외동 175-592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은평구 진관외동 260-3 이무규	○ 진관외동 259-11, -34, -35, 260-3, -8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용산구 용문동 38-41 고준자 외 2인	○ 진관외동 460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은평구 진관외동 449-3 손한규	○ 진관외동 449-3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은평구 구파발동 134-5 홍종해	○ 구파발동 134-5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	
종로구 부암동 345-8 나성욱	○ 부암동 345-8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 (경계선이 주택 판통)	
종로구 부암동 345-3 최기원	○ 부암동 345-3 지적선대로 경계선 조정 (경계선이 주택 판통)	

공람시 제출의견 (마장동 766-49 일대 시장 결정)			
제출일자	의견제출자	내 용	반영여부
2001. 4. 7	우성농역(주)	○ 축산물 거래량의 감소로 시장용지의 지정은 부적절함.	미반영
2001. 4.15	준섭이엄마	○ 108동 앞 아파트 건립이 왜 “소”도매유통센터로 바뀌었는지 해명 요청	미반영
2001. 4.15	성동주민	○ 녹지대가 부족한데 공원을 못 만들지언정 축산물센터가 뭐냐 백지화하라	미반영
2001. 4.15	?	○ 언제나 성동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	미반영
2001. 4.13 2001. 4.16	우성농역(주)	○ 서울시는 주민의 요구로 '92년 7월 이전부지를 구리도매시장에 마련하였고 핵심시설인 도축장도 '98년 3월에 폐쇄하였으며 ○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축산물을 자유판매토록 축산물거래방법이 변경되어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○ 2000년 8월부터 축산물 도매거래가 없어 2001년 4월 1일 폐업하였으며 ○ 2000년 10월 주택건설 사업승인 받았음.	미반영
2001. 4.17	성동구민	○ 주민이 알기 전에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	미반영
2001. 4.14 (2001.4.13)	이재춘	○ 마장동 축산물시장 신설을 반대함.	미반영
2001. 4.15	성동주민	○ 마장동 현대아파트 정면에 소, 돼지 머리가 웬 말이나	미반영
2001. 4.15	황준섭	○ 마장동 축산물시장 신설을 반대함.	미반영
2001. 4.18	김나나	○ 마장동 축산물시장 신설을 반대함.	미반영
2001. 4.18	조화연	○ 마장동 축산물시장 신설을 반대함.	미반영
2001. 4.25	(주)신성	○ 마장동 축산물시장 신설을 반대함. (당초 승인된 아파트 건립 요망)	미반영
2001. 5. 1	마장동 817 삼성아파트 입주장대표회의 (348명)	○ 축산물 유통구조가 바뀌었다. ○ 일관성 없는 정책에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. ○ 도시개발정비에 형평성을 잃었습니다. ○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킵니다. ○ 국가예산이 허비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. ○ 대상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속	미반영
2001. 4.23	미장동 신성 연합조합주택 (120명)	○ 도시계획안에 반대하며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속 요구	미반영

제출일자	의견제출자	내 용	반영여부
2001. 4.20	마장동 818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(구의원 양태범 외 816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공원조성 및 기존 축산물시장의 시설 개선 ○일반 주거지역으로 존속 ○서울시농수산물조례 제10조제2항 조속히 개정 ○중요 정책 입안시 관련 주민들에게 적극 공지 	미반영
2001. 4.14	성동구민	○우시장 유통센터 건립을 제고하라	미반영
2001. 4.14	글본이	○옛 우성농역을 수용하여 공원을 조성	미반영
2001. 4.14	현대아파트주민	○절대 안될 일 우리 구에 축산물유통시장	미반영
2001. 4.18	성동구청장	○축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며, 현재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악취, 소음 등으로 도심 부적격 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(축산부류)의 결정은 불합리함.	미반영
2001. 4. 7	도시계획 상임기획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설 결정의 실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 대상지를 새로이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입지 및 시장 수요 분석, 향후 관리방안 등의 제시가 요망됨. ○시장 결정시에는 유통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	반영
2001. 4.17	도시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시장의 기능에 적합한 유통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추후 시장이 해제될 경우에는 주변지역과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조정하도록 조건부여 ○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필요함. 	일부 반영

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 897

제출년월일 : 2001. 6. 9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장충체육관~한남삼거리간 도로폭원 축소
2. 입안내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
기정	광로	3	44	40	-	2,160	장충체육관 (광로 10)	제1호터널 남측	-	
변경	"	"	"	"	주간선도로 (시도)	560	한남삼거리	제1호터널 남측	일반도로	
"	대로	2	98	22~30	보조간선도로(시도)	1,600	장충체육관 (광로 10)	한남삼거리	"	

3. 입안사유
- 당초 도심부와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결정되었으나 남산1호터널 남측에서 한남삼거리구간은 개설되었고 잔여구간은 문화재(수표교) 및 남산자연공원이 훼손됨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임.
 - 중구청으로부터 남산자연공원 훼손의 최소화 및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의 적정폭을 확정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임.
4. 추진경위
- '77. 2. 4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 - '99.4~'00.4 :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시행
 - '00. 8. 18 : 도시계획안 공람공고(중구공고 제2000-203호)
5. 참고사항
- 주민 의견청취 현황
 - 공람공고 기간 : 2000.8.18 ~ 9. 1
 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세계일보, 대한매일)
 - 접수의견 : 없음
 - 중구의회 의견청취 : 원안동의(2000.10.4)
 - 상임기획단 우선 검토의견
 - 이견 없음
 - 관련부서 의견
 - 도로계획과 :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 - 문화재과 :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시(2000.3.6) 의결된 조건 준수

- ※ 수표교 좌우 10m 이상 구간 확보하여 석재마감하고 도로설계 확정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(실시설계 반영)
- 공원녹지관리사업소 : 장충단공원 분수대, 어린이놀이터, 장충어린이 야구장의 기능유지(실시설계시 반영)
- 한국리틀야구연맹 : 리틀야구장 후문 Ramp시설, 출입문 설치, 펜스설치
- 저축토지 및 건물
 - 토지 : 80필지 60,154㎡
 - [국·공유지 : 61필지, 54,055㎡
 - 사유지 : 19필지, 6,090㎡
 - ※ 해제부분 : 59필지 23,776㎡(국·공유지 31필지 14,831㎡, 사유지 28필지 8,945㎡)
 - 지장물 : 분수대, 놀이터, 리틀야구장
- 도시계획사항
 - 공원(경관지구, 미관지구), 문화재보호구역
 - 건설부고시 제25호('77.2.4)

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
번호 898

제출년월일 : 2001. 6. 9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철도, 녹지, 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
2. 입안내용
 - 가.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		연 장 (m)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점	종 점	주 요 경과지				
당초	철 도	일반철도(경의선)	용산역	서울시계	가좌, 성산, 수색정거장	11,256	1,392,197	'73.12.30	선형조정(7개소), 감 15,595㎡
변경	"	"	"	"	"	"	1,376,602		

○ 철도역(정거장)						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	
신설	철 도	일반철도 (가좌정거장)	마포구 성산동 122-1 일대	15,355		
"	"	" (성산정거장)	은평구 증산동 27-7 일대	16,721		
"	"	" (수색정거장)	은평구 수색동 81 일대	30,021		

○ 차량기지						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	
신설	철 도	일반철도 (수색차량기지)	마포구 상암동 1195 일대	316,690		

나. 도시계획시설(녹지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 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당초	변경	변경후		
변경	녹 지	완충녹지 (경의5녹지)	서대문구 남가좌동 296일대	1,900	-	1,900	'78.8.30	면적증감 없이 위치변경(250m ²)

다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중 점	사용형태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
당초	대로	1	14	35	-	4,050	사천교	서울시계 (수색동)	-	'76.7.19	수색로 일부구간 (437m) 확폭
변경	"	"	"	35~40	주간선도로	"	남가좌동 (사천교)	"	일반도로		
당초	중로	1	126	20~35	보조간선도로	1,530	사천교 (대3-97)	상암동 (대3-1)	일반도로	2000. 9.21	일부구간 확폭 (380m)
변경	"	"	"	20~40	"	"	"	상암택지 개발지구 (대3-1)	"		
신설	중로	3	408	12	집산 도로	103	중 동 (중 1-126)	남가좌동 (대1-14)	일반도로	-	과선교 신설
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북서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 통행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남북간 철도기간망 확충을 위하여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·결정을 국가계획으로 시행코자 함. ○ 철도청에서는 1단계로 가좌~문산간 기존 경의선을 복선전철화하고 2단계로 용산~가좌구간은 신공항전용철도와 병행하여 건설할 계획(지하화)으로 추진 중에 있음. ○ 금번 1단계 구간 중 우리 시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의견 조희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의견을 제출코자 함. 	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0.12.22 :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·결정에 따른 의견조희 (건설교통부→서울시) ○ 2001. 1.13 : 도시계획입안서류 보완요청 (서울시→건교부) ○ 2001. 3.19 : 도시계획입안서류 보완 (철도청→서울시) ○ 2001. 4.26 :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<p>5. 공람공고시 제출 의견 : 1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잔여토지 전면 수용 요구 - 한도특수자동차(주) <p>6. 관련부서 협의 결과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의견제출 부서	제 출 의 건
도시계획과	○ 상암 새천년 신도시 통과 및 향후 남북통일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중요 교통축으로서 지상보다 지하건설 유도
도시관리과	○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위해 철도시설 계획구간 저축 주택 우선 보상 ○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저축되는 철도청 시설물(오페수처리시설 등) 우선 이전
도로계획과	○ 경의선변 도로와 철도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결정
은평구	○ 21C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서울시 서북권 부도심 육성 및 상암새천년 신도시와 연계 개발을 위해 은평구 관내 지하화 계획 ○ 성산정거장 진입도로 확장(12m→25m)
서대문구	○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 및 기존 지상선은 도로 등으로 기능회복
지하철 건설본부	○ 지하철 6호선 수색역과 환승되는 경의선 성산역의 환승시설 설치시 우리 시(도시철도공사)와 협의 시행

<p>7. 기타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의선 철도 개통일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역~신의주간(299.3km) : 1906년 4월 25일 - 용산~수색간(9.4km) : 1929년 9월 20일 ○ 용산~가좌구간 건설방안 확정통보('99.10.1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심도 지하4선 건설(인천국제공항철도, 경의선전철) - 지상1선 존치(공사후 원상 복구) 	<p>.....</p> <p>택시요금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<p>의안 번호 899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<p>2001년 6월 일 교 통 위 원 회</p> </div> </div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9일, 서울특별시시장 제출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